

#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산림 307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17.9월 기준 산림 349만ha가 PEFC 인증을 받음)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IFCC 인증서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SLK(Sertifikat Legalitas Kayu) 인증서 : KAN(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국가인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25개 인증기관의 인증서 (25개 인증기관 목록: <a href="http://silk.menlhk.go.id/index.php/info/lvfk">http://silk.menlhk.go.id/index.php/info/lvfk</a> ) ※ 각 기관별 SLK의 영문 발급본인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도 동일하게 인정됨 (SILK 사이트를 통해 목재합법 증명서 번호 공개 및 상세정보 확인 가능)	첨부 1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V-Legal 문서 (인도네시아는 원활한 산림협력력을 위해 유럽연합과 VPA/FLEGT를 2014년에 체결함. 이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2016년부터 FLEGT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첨부 2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인도네시아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SVLK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SVLK 적용범위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벌채, 생산, 유통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됨.)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Certificate

**Standard** The Director General of Forest Production Development's Regulation Number : P. 8/VI-BPPHH/2012 dated December 17, 2012 Concerning Standard and Guidelines on Assessment of Performance of Sustainable Production Forest Management and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Certificate Registr. No.** [REDACTED]

**Certificate Holder:** [REDACTED] certifies:  
[REDACTED]

**Head Office :**  
[REDACTED]

**Factory :**  
[REDACTED]


**Scope:** Downstream Timber Industry License – Head of BKPM Decision Letter No. 453/T/INDUSTRI/1995 dated September 20, 1995 jo. 620/T/INDUSTRI/1998 dated November 24, 1998 jo. 426/T/INDUSTRI/2001 dated November 12, 2001 jo. 310/T/INDUSTRI/2008 dated April 04, 2008 jo. Revision of Industrial Business License No. 67/1/IU/III/PMA/INDUSTRI /2012 dated March 15, 2012 jo. KBLI Revision Letter No. 109/B.2/A.8/2012 dated June 15, 2012

Holders of Downstream Timber Industry License (Advanced IUI) for Manufacturing of Test Liner/Corrugated Medium, Folding Box Board, Corrugated Carton Box, Paper Tube, Paper Cone, Box, Duplex/Manila/Ivory/Art Board/Solid Bleached Board, Printed Packaging Products.

Comply with the criteria and indicator of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Director General of Forest Production Development's Regulation Number: P. 8/VI-BPPHH/ 2012 dated December 17, 2012 Annex 3.4 Guidelines on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in Primary Industry (IUIPHHK) and Downstream Timber Industry (Advanced IUI)

**Validity:** The certificate is valid from 03-07-2012 until 02-07-2015.  
Revision 01 dated on 02-07-2013


Jakarta, 02-07-2013



[REDACTED]

Precisely Right.

[첨부2] V-Legal 문서



A.		B.
3 COPY FOR IMPORTER	<b>1 Issuing authority</b> Name Address Authority registration number	
	<b>2 V-Legal license number</b>	
	<b>3 Country of export</b>	
	<b>4 Date of Expiry</b> _____	
	<b>5 ISO Code</b>	
	<b>6 License</b> Name Address ETPIK Number Tax Payer Number	
	<b>7 Means of transport</b>	
	<b>8 Commercial description of the timber products</b>	
	<b>9 HS-Heading</b>	
	<b>3</b>	
<b>10 Common and Scientific Names</b>		
<b>11 Countries of harvest</b>		
<b>12 ISO Codes</b>		
<b>13 Volume (m3)</b>		
<b>14 Net Weight (kg)</b>		
<b>15 Number of units</b>		
<b>16 Distinguishing marks</b>		
<b>17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b>  Name  Place and date		

# 인도네시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산림 현황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120,900,000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6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는 보안림(Protection Forest) 24.5%, 보전임지(Conservation Forest) 18.3%, 전환가능한 생산림(Convertible Production Forest) 10.8%, 영구 생산림(Permanent Production Forest) 46.4%로 구분됩니다.<sup>1)</sup>

- 보안림(Protection Forest) : 29,600,000 ha
- 보전임지(Conservation Forest) : 22,100,000 ha
- 전환가능한 생산림(Convertible Production Forest) : 13,100,000 ha
- 영구 생산림(Permanent Production Forest) : 56,100,000 ha

인도네시아는 산림법(Forestry Law No.41/1999)에 따라 관습림을 포함한 국유림(State-owned forests including customary forest)과 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으로 구분됩니다.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가 지속가능한 산림의 경영과 목재합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을 위한 두 가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sup>2)</sup>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는 국유림(State Forest)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산림법 제41호(Forestry Law No.41/1999)와 정부 시행령 제6호(Government Regulation No. 6/2007)에 따라 허가 신청 절차, 허가 기간(연장, 취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sup>3)</sup> 또한 장관령(P.43/Menhut-II/2014)을 근거로 하여 변경된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장관령 (P.95/Menhut-II/2014)은 허가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림의 경영성과 평가와 목재합법성 검증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up>4)</sup>

1) Promoting Trade of Legal Timber through Implementation of SVLK and FLEGT-VPA, p2, APEC 2017

2)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p7

3)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p7

4) 2017년 임업동향지 4호, p24, 한인니 산림센터

##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인도네시아의 산림 소유권은 국유와 사유로 구분되며 소유권별 벌채를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림의 목재 관리(MoEF Regulation No. P "42 I Men I h k-Setje n/2015)
- 인공림의 목재 관리(MoEF Regulation No. P.43lMen I h k-Setjen/2015)
- 특정 용도지역(MoEF Regulation No. 50/2010 and No.12l20Lz)
- 목재 관리 규정(MoEF Regulation No. P" B5/Men I hk/Setjen/Ku m.L I II I 2016)
- 사유림 식재 주요 수종
  - \* 상업수종 : Teak, Mahogany, etc
  - \* 속성수종 : sengon (Falcataria), jabon (Antocephalus), etc
  - \* 과수(fruit tree)

인도네시아에서의 합법적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TES 비준 대통령 훈령 No.43lL97B
- 생물 자원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규정 No.5/1990
- 지방 행정 규정 No.32l2004
- 환경 보호 및 관리 규정 No. 32l2009
- 산림과피 방지 및 예방 규정 No. 18/2003
- 무역에 관한 규정 No. 7l2004
- MoEF SVLK 규정 No.P.30l2006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목재임산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허가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 주민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 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 복구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 이용허가(IPK)
-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 가공사업허가(IUI) 또는 가공사업등록증(TDI)
- 사업자등록증(TDP)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는 관할 당국이 1인의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1개 장소에서 원목 또는 우드칩을 생산물로 가공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은 개인, 조합 또는 지방 기업이 소유한 사유림 또는 주민 조립지의 목재를 가공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가공사업허가(IUI)는 토지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상인 목재가공산업 허가를 의미하며, 가공사업등록증(TDI)은 투자나 사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하인 목재가공산업 허가를 의미합니다.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및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소유자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TDP) 소유자는 국가 간 목재 또는 목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500만 루피아 이하, 1~4명 사이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 규모 산업을 가내수공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투자금이 2억 루피아 이하인 산업은 소규모 산업으로 구분합니다.

합법적인 벌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에 따라 다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1. 국유림(State-owned forests)

: 국유림의 경우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에서 목재관리 정보시스템(SI-PUHH)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는 온라인 전자전송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됩니다.

\* [www.puhh.phpl.menlhk.net](http://www.puhh.phpl.menlhk.net)

## 2-2. 사유림(Privately-owned forests)

: 사유림의 경우 산림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MoEF)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전송한 문서와 운송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1차 생산이 진행됩니다.

##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국외로부터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와 동시에 원산국(country of origin)과 벌채국(country of harvest)로부터 목재합법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임산물 수입 활동의 법적 준수에 관하여 국내 사업자는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림환경부령으로 규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법성 원칙이 충족되는 경우 실사 결과는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신고서의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업자는 위험평가 규정 제10조 제1항제C호(Risk Analysis Article 10(1)c)와 위험완화규정 제10조제1항d(Risk Mitigation Article 10(1)d)에 따라 다음의 문서 등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sup>5)</sup>

- 목재합법성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국가별 가이드라인(Country Specific Guideline, CSG) 해당여부
-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ze Agreement, MRA) 해당여부
- FLEGT licence 해당여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평가와 목재합법성 검증(VLK)은 평가, 검증,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통해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으로 수행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은 산림관리 개선과 합법목재무역 증진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PHPL)의 평가 인증, 목재합법성 인증과 공급자 준수 선언(DKP)으로 산림경영의 지속성과 목재합법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표준과 지침은 표준,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및 안내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며, 목재합법성 검증(VLK)의 표준과 지침은 기준, 표준, 지표, 검증 기관, 검증 방법 및 평가, 당사자(임업 관계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목재합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를 소유하지 못한 허가권 소유자와 경영권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 소유자
- 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 소유자
- 생태계 복원 목재 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및 경영권자

다음의 이용사업허가, 사업허가를 소지하는 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산지임차 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 또는 복구조림지 목재임산물 이용 사업허가(IUPHHK-HTHR) 소지자는 작업계획 승인 이후에 반드시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보유해야 합니다.

---

5) Promoting Trade of Legal Timber through Implementation of SVLK and FLEGT-VPA, p2, APEC 2017

- 공동체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 주민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
-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 복구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HR)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
- 주민목재가공산업(IPKR)에 포함된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PHHK)
- 가공사업허가(IUI)
- 가공사업등록증(TDI)
- 등록된 저장소(TPT)
- 사업자등록증(TDP)를 소유한 임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
- 가내수공업(IRT)
- 사유림 소유자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http://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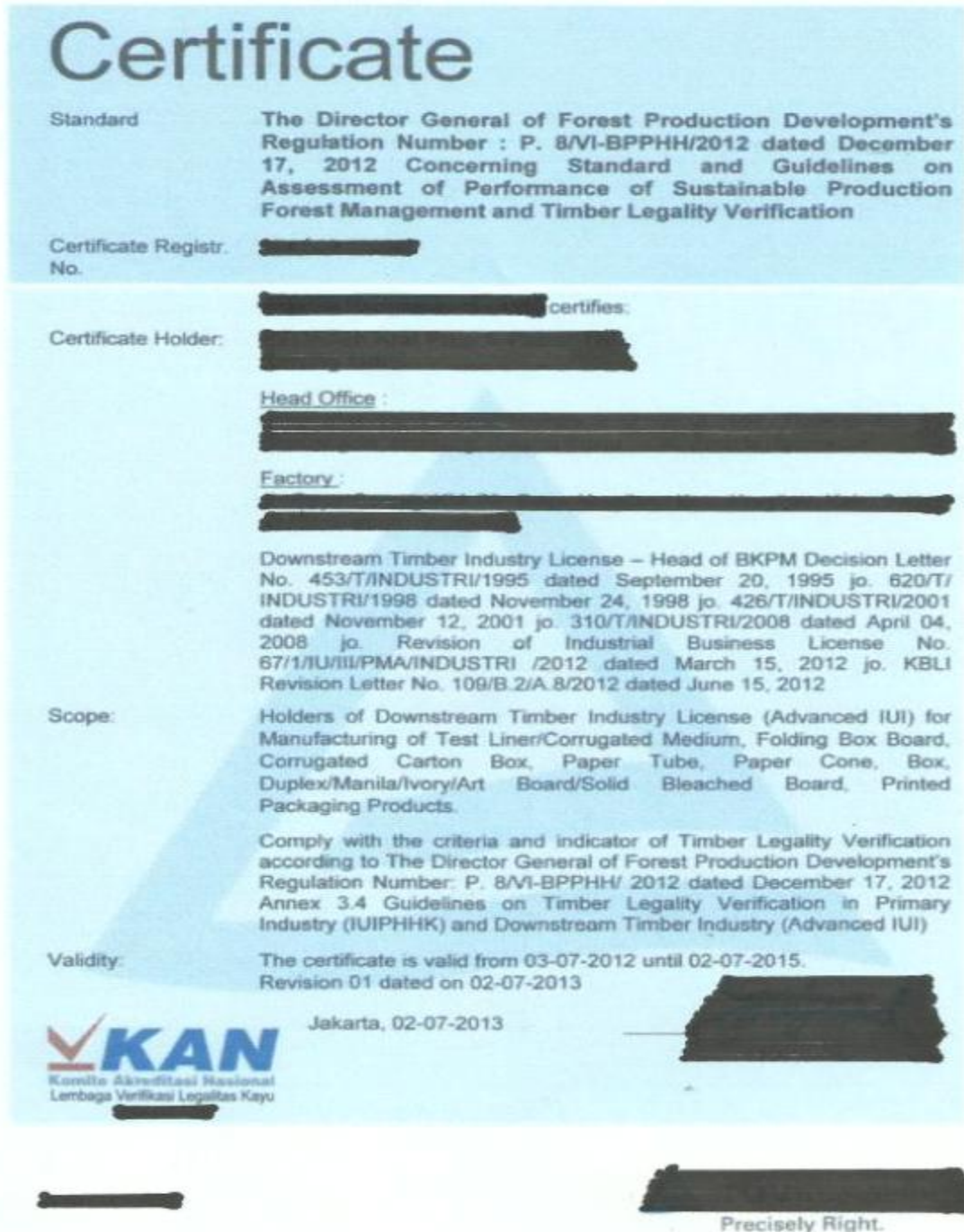


그림 14. 인도네시아 Timber Legality Certificate

입의 점검은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목재합법성에 대한 조사 활동이며 발급절차는 산림환경부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급자 준수 선언(DKP)에 대한 불일치 그리고/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목재합법성에 대한 검사 활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하기 이전에, 공급자 준수 선언(DKP)은 다음의 대상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유림 소유자(공급자 준수 선언은 운송증 또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
- 가내수공업(IRT)
- 목재가 아래와 같은 곳에서 공급받는 등록된 저장소(TPT)
  - \* 목재합법성 인증서(S-LK)/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 소유자
  -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을 보유한 경영권 소유자
- 모든 원자재를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사유림에서 공급받는 가공사업허가(IUI), 임산물1차가공 사업허가 (IUIPHHK), 가공사업등록증(TDI)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 (IRT)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판매업체는 공급자가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취득하거나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발급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임가공품 판매업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원자재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가공사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그리고 사업자등록증(TDP)을 소지한 판매업체가 목재합법성 인증서(S-LK)가 없는 공급업체나 등록된 저장소(TPT)에서 원자재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합법성 검증기관 (LVLK)에 의한 조사, 감독 및 재인증을 통해 목재(원자재)합법성 검증(VLBB)을 받아야만 한다.(생산능력이 연간 6,000m<sup>3</sup>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 소유자에 한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는 허가권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주는 증명서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증명하며,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는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목재합법성 표준에 적합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각 요건에 대한 이행 사항 및 증명자료를 기반으로 공급자가 수행하는 적합성 선언을 의미하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사용하는 원자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한 산림지역, 기타용도지역, 사유림에서 생산된 원자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을 보유하지 않은 목재 공급자/목제품에 대하여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이 목재(원자재) 합법성검증(VLBB)을 시행합니다.

합법성 관련 객관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을 인가하는 기관은 국가인가위원회(KAN)이며 인가를 희망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인가 규정에 따라 국가 인가위원회(KAN)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가위원회의 인가를 근거로 하여 산림환경부장관은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의 지정을 근거로 산림환경부장관은 V-Legal 문서 발급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에서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림환경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 경영권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와 검증기관(LP&VI)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성과 평가, 목재합법성 검증(VLK)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부처가 부담합니다. 단, 차후 기간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의 성과 평가 또는 목재합법성 검증(VLK) 비용은 권리/허가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부담됩니다. 주민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Km)/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 6,000 m<sup>3</sup>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 (IUIPHHK),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사업허가(IUI), 산업 등록증(TDI), 가내수공업 (IRT)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검증(VLK)을 단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에 의한 1차 감독기간의 합법 목재 인증 비용은 사유림 소유자,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주민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m)/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생산능력이 연간6,000 m<sup>3</sup> 이하인 임산물 1차가공사업허가(IUIPHHK) 소유자, 가공사업허가(IUI), 사업 등록증(TDI) 소유자의 단체와 사유림

소유자, 주민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K<sub>m</sub>)/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D) 소유자 단체에 대한 목재합법성 검증기관(LVL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감독 비용은 생산 전까지 정부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력 없는 다른 재원에서 부담합니다. 단, 평가 또는 검증을 위한 정부 비용이 제한된 경우 허가권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의 획득을 목적으로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에 독자적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평가기관(LPPHPL)은 성과 평가 통과 요건을 충족한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 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RE) 소유자 또는 경영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를 발급하며 평가 결과가 “나쁨”으로 지정된 허가권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PHPL) 성과를 개선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는 목재합법성 검증표준의 “충족” 등급일 때 발급되며 검증결과가 “불충족”일 경우,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및 사유림 소유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부적합한 내용을 정정한 이후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및 사유림 소유자는 목재합법성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정부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가내수공업(IRT)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관련 웹사이트와 정부 웹사이트(<http://silk.dephut.go.id>)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평가 또는 목재합법성(LK) 검증의 결과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정보 관리는 산림환경부령에 근거하여 목재합법성 정보시스템(SILK)을 활용하여 목재합법성 검증 정보단에서 관리합니다.

평가 및 검증의 모든 과정, 결과는 허가권, 경영권,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평가 또는 검증 결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 허가권, 경영권 또는 사유림 소유자는 국가인가위원회(KAN) 에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가위원회(KAN)는 산림환경부 장관이 규정한 이의제기 및 해결절차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에게 평가 또는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은 평가 또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권리/허가권, 가내수공업(IRT)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에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하고 산림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발급된 인증서는 목재임산물 이용허가 (IUPHHK)의 발급 및 연장에 사용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그리고 감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은 허가권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천연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A)/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T)/생태계복원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RE)/경영권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주민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IUPHHK-HTR)/공동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Km)/ 마을림 목재임산물 이용사업허가 (IUPHHK-HD)/ 복구조립지 목재임산물 이용허가(IUPHHK-HTHR)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번 실시
- 산지임차사용허가(IPPKH)에 포함된 원목벌채이용허가(IP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감독은 인증서 만료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실시
- 모든 원자재에 운송증 또는 목재 운송 허가 문서(SKAU)를 이용하는 목재 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PHHK)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 생산능력이 연간 6,000m<sup>3</sup> 초과인 목재임산물 1차 가공 사업허가(IUPHHK)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생산능력이 연간 6,000m<sup>3</sup> 이하인 목재임산물 1차가공 사업허가(IUPHHK)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초과인 가공사업허가(IUI)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12개월에 한 번 실시

- 투자금 Rp 500,000,000(오억 루피아) 이하인 가공사업허가(IUI), 등록된 저장소(TPT), 가공사업등록증(TDI) 및 사업자 등록증(TDP)을 소유한 임가공품 판매회사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 사유림과 가내수공업(IRT) 소유자의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감독은 최소 24개월에 한 번 실시

등록된 저장소, 가내수공업 및 사유림 소유자의 공급자 준수 선언(DKP) 유효기간은 이용 중인 운송서류의 유효 기간과 같으며 공급자 준수 선언(DKP)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지명한 목재합법성 검증 기관(LVLK)에서 불시 조사를 실시하며, 선언 내용 중 부적합 또는 허위가 발견되거나 명확히 기대되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임명한 목재합법성 검증기관 (LVLK)에서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075,371 ha이며 CoC 인증은 260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http://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491,040 ha이며 CoC 인증은 32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http://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인도네시아는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국제산림인증제도와 상호인정되는 인도네시아산림인증법인(Indonesia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경영인증(FM, Forest Management)과 임산물제품인증(CoC, Chain of Custody)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인도네시아산림인증법인(Indonesia Forest Certification Corporation)으로부터 발급받은 산림경영인증서(FM) 또는 임산물제품인증서(CoC)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FCC 인증 마크 >

인도네시아는 원활한 산림협력을 위하여 유럽연합과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 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을 2014년에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부터 FLEGT 면허제도(licencin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출처 : [www.euflegt.efi.int/drc](http://www.euflegt.efi.int/drc)

외교부 EU-인도네시아 목재제품에 대한 면허제도 시행에 합의 알림 문서

EU FLEGT 자발적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양자협정으로서 자발적 협약 체결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자국내 통제, 확인 및 허가시스템(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하고, 동 협약이행 체계가 완비된 것으로 EU와 해당국이 공동합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EU FLEGT 면허를 부여합니다. EU FLEGT 면허를 획득한 수출 목재/목재제품은 EU 목재규정(EU Timber Regulation 995/2010)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V-Legal 마크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PHPL) 표준 또는 목재합법성 검증 (VLK)의 표준 또는 공급자 준수 선언(DKP) 규정을 충족시킨 것을 설명하며, 목재, 목제품, 포장 또는 운송 중에 부착하는 마크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에 맞게 목재합법성 검증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간에 운송되는 인도네시아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성 문서로 V-Legal 문서가 발급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 (S-PHPL) 또는 목재합법성 인증서(S-LK)를 발급 받은 허가권 소유자, 경영권 소유자 및 사유림 소유자는 V-Legal 마크를 부착해야만 합니다. 단, 경매목과 경매목을 원료로 한 목재제품은 V-Legal 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목재제품의 벌채, 생산,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V-Legal 문서(V-Legal Document)를 2013년 1월 1일부터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V-Legal 문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개별 번호와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sup>6)</sup>

\* 붙임 2.


- 발급기관의 기관명, 등록번호, 주소, 직인
-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업자의 정보
- V-Legal 문서 발급 번호
- 문서 유효기간(4개월)
- 수출국 및 경유국
- 수출업체명, 등록사항, 주소
- HS code
- 목재제품의 수종명, 벌채국가 정보, 부피(m<sup>3</sup>), 중량(kg), 수량

---

6)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Indonesia, p8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Indonesi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http://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A.		B.		
COPY FOR IMPORTER	<b>3</b> 1 Issuing authority Name Address Authority registration number		Name Address Country of destination and ISO Code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Value (USD)	
	3 V Legal licence number		4 Date of Expiry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5 Country of export		7 Means of transport	
	6 ISO Code			
	8 Licensee Name Address		ETPIK Number Tax Payer Number	
	9 Commercial description of the timber products		10 HS-Heading	
	11 Common and Scientific Names		12 Countries of harvest	13 ISO Codes
	14 Volume (m3)	15 Net Weight (kg)	16 Number of units	
	17 Distinguishing marks			
	18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Name  Place and date			

L7 - 19

그림 15. 인도네시아 V-Legal 문서

인도네시아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의 합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SVLK(TLAS,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VLK의 적용 범위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거나 인도네시아 내에서 벌채, 생산, 유통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이 해당됩니다. 국유림 허가서 소지자, 사유림 소유주, 유통업자, 수출업자는 합법성 증명을 위하여 원자재에 따라 입고, 보관, 가공, 운송에 대한 구분된 기록 사항을 관리하고 문서화하며 산림환경부 지방사무소(Provincial and district forestry official)에서 점검합니다.

수출을 위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기관은 25개 기관(2017년 8월 기준)으로 증명서 내에 명시된 발급기관의 세부 사항을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vleg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vlegal>

No	Exporter Name	Exporter Address	LVLK Name	No S-LK	S-LK Date	ETPIK	Promotion
1	SAHABAT FURNITURE INDONESIA	JL. RMP SOSROKARTONO KEL. BAPANGAN RT.3/1 KEC. JEPARA, JEPARA	PT. ALMASENTRA SERTIFIKASI	28	17 Apr 2017 - 16 Apr 2023		
2	YUTIAN GARDEN FURNITURE	JL. MLONGGO - BONDONG RT 05 RW 02 SROBYONG, MLONGGO, JEPARA, JAWA TENGAH - INDONESIA.	PT. ALMASENTRA SERTIFIKASI	28/SVLK-021/04.2017	17 Apr 2017 - 16 Apr 2023		
3	KINA CITRATAMA	DESA LANGON RT 07/04, KECAMATAN TAHUNAN, KABUPATEN JEPARA, PROVINSI JAWA TENGAH	PT. ALMASENTRA SERTIFIKASI	28	17 Apr 2017 - 16 Apr 2023	ETPIK	
4	JEPARA CARVER	SENEANAN RT 05 RW 02 KECAMATAN TAHUNAN, KABUPATEN JEPARA, PROVINSI JAWA TENGAH, KODE POS 599426	PT. ALMASENTRA	28/SVLK-021/04.2017	17 Apr 2017 - 16	ETPIK	

그림 16. 인도네시아 수출업자 목록

인도네시아는 SILK(System Information Legalitas Kayu) 사이트를 통해 수출업자와 발급된 목재 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iuiphhk>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재합법 증명서(Timber Legality Certificate)는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 합법성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http://silk.dephut.go.id/index.php/info/iuiphhk>

The screenshot shows the SILK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header with the logo 'Indonesian LEGAL Wood' and 'SISTEM INFORMASI LEGALITAS KAYU (SILK) TIMBER LEGALITY INFORMATION SYSTEM (TLIS)'. A search bar is present with the text 'Enter keyword here...' and a magnifying glass icon. The date 'Tuesday, 22 August 2017' is displayed. Below the header is a navigation menu with items: Home, About Us, Information, Publication, Regulation, Article, Cooperation in S, and F.A.Q.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breadcrumb trail: Home / Info / Iuiphhk. Below this is the title 'List Of Certificate Holders'. There is a search section with a dropdown menu set to 'Company Name' and a text input field for 'Number'. A blue button labeled 'Enter Searching ...' is to the right. Below the search section is a pagination control showing '1 of 221' items.

The table below lists the certificate holders with the following columns: No, Company Name, Office Address, LVLK Name, No S-LK, S-LK Date, ETPIK, and Status.

No	Company Name	Office Address	LVLK Name	No S-LK	S-LK Date	ETPIK	Status
1	354	JL. RAYA GERONGAN DESA GERONGAN KECAMATAN MARON KABUPATEN PROBOLINGGO - JAWA TIMUR	PT. Trustindo Prima Karya	111.SVLK 010-IDN.04.15	02 Apr 2015 - 01 Apr 2018	Non ETPIK	Valid
2	7 SEVEN	DESA PULODARAT RT. 10/RW. 02, KEC. PECANGAAN, KAB. JEPARA, PROP. JAWA TENGAH	PT. Sucofindo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VLK 00366	26 Nov 2013 - 25 Nov 2019	ETPIK	Valid
3	A CLASS	GG KAWUNG II, RT 001 / 007, KELURAHAN SONDAKAN, KECAMATAN LAWEYAN, KOTA SURAKARTA, PROVINSI JAWA TENGAH	PT. Mutuagung Lestari	LVLK-003/MUTU/LK-445	17 Oct 2016 - 16 Oct 2022	Non ETPIK	Valid
4	A. AMIN FURNITURE	KANTOR DAN PABRIK : DESA MAMBAK, RT. 03/RW. 04, KEC. PAKIS AJI, KAB. JEPARA, PROP. JAWA TENGAH	PT. TUV Rheinland Indonesia	824303130029	16 Aug 2013 - 15	ETPIK	Valid

그림 17. 인도네시아 인증서 취득자 목록

법률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의 인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공급자 준수 선언(DKP), 실사(Uji Tuntas/Due Diligence), V-Legal 문서의 평가, 발급, V-Legal 마크 부착 등을 위한 임업분야 공공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 모니터링은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행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서(S-PHPL) 인가, 평가, 발급, 목재합법성 인증서(S-LK) 검증 및 발급, 공급자 준수 선언(DKP) 발급, V-Legal 문서 발급, V-Legal 마크 부착, 그리고/또는 불만 사항 해결의 전체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 통합적 방법으로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에 의해 시행됩니다.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허가권자, 경영권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가 위치하거나 운영하는 지역 내 또는 근처에 거주 또는 존재하는 주민
- 임업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 인도네시아 내 규정으로 설립된 산림 감시 비정부기구(NGO)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니터링 수행과 관련된 기관과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모든 당사자로부터 제22조 2항에 명시된 전체 과정 데이터와 정보의 취득
- 모니터링 수행 중 안전 보장의 획득
-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 출입 허가의 획득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임무와 관련된 특정지역에 출입할 경우 신분 또는 모니터링 기관 소속임을 증빙
- 서명한 비밀유지협약서에 의거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기록, 서류 및 정보를 보존, 보호 및 기밀유지
- 국가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을 경우 국가 재정 보고 및 사용 지침 준수

정부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가 모니터링 전후 그리고 과정에서 물리적 및 언어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체계를 수립하며 법률규정에 따라 독립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독립 모니터링 수행비용은 중앙정부예산(APBN), 주정부예산(APBD) 또는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른 재원에서 조달하고, 정부는 목재합법성 검증 시스템(SVLK)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유림 소유, 생산 능력이 연간 6,000 m<sup>3</sup> 이하인 임산물 1차 가공사업허가(IUIPHHK), 가공사업허가(IUI), 산업등록증(TDI), 등록된 저장소(TPT), 가내수공업(IRT), 독립 평가 및 검증기관(LP&VI), 그리고 독립 모니터링 수행자(PI)의 역량 강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술 또는 재정 지원은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며 정부 비용이 제한되는 경우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다른 재원에서 사용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Teguh Widodo(Timber administration)
- e-mail : twidodo82@yahoo.com
  
- 성명 : Sigit Pramono(SVIK/Indonesian Timber Legality Assurance System)
- email : sigitp01@gmail.com
  
- 성명 : Mariana Lubis(Licencing Information Unit-export, import, certification, SILK online)
- email : marianalubis1962@gmail.com
  
- 성명 : Jl. Gatot Subroto(Licence Information Unit)
- email : subdit-ivlk@dephut.go.id